

[별표 1]

주야간보 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2.01.01기준)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 분	장기요양 1등급	장기요양 2등급	장기요양 3등급	장기요양 4등급	장기요양 5등급	인지지원 등급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36,950	34,210	31,580	30,140	28,700	28,70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49,530	45,880	42,350	40,910	39,450	39,450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61,600	57,070	52,690	51,250	49,790	49,790
10시간 이상 ~12시간 미만	67,870	62,870	58,080	56,620	55,180	49,790
12시간 이상	72,780	67,420	62,280	60,840	59,400	49,790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,672,700	1,486,800	1,350,800	1,244,900	1,068,500	597,6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
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	9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